金融通貨委員會 議事錄

2005년도 제13차 회의

1. 일 시 2005년 6월 23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남 위 원 (의장직무대행)

김 태 동 위 원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이 덕 훈 위 원

4. 결석위원 박 승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정 규 영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양 정 균 금융안정분석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김 수 호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광 준 공보실장

6. 회의경과

〈의안 제23호 — 2005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중소기업대출 취급 원활화를 위하여 2005년 3/4분기 총 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005년 2/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3월말 8.3조원이었던 총액한도대출 잔액이 4~5월중 다소 늘어 5월말 현재는 8.6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배정한도 9.4조억원 대비 약 8천억원 미달한 수준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이 같은 한도와 실제 대출액간 차이를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바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촉진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무적으로 한도 배정기준을 개선하여 총액한도대출 대상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적발된 대출 위규수혜 은행과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감한 한도를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여타 은행 등에 추가 배정함으로써 한도와 실제 지원액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시설자금의 경우 만기가 최소 3~5년 정도이므로 분기별로 금통위에서 정하는 한도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과 직접 연계시키기엔 무리가 있어 일정 기간중 시설자금 대출 취급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큰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를 더 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의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을 통해 몇 가지 용도의 기업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한국은행의 대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동 거래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지난 1~2개월간 총액한도대출의 한도와 실제대출액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 대출액이 4,5월 합해서 3,000억원 정도 늘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6,7월에도 지속될지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출한도와 실제 대출액 간에 격차가 컸던 이유는 대출 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위규수혜 은행 및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한 한도 차감 때문인데, 지난 5월부터 위규수혜 은행에 대한 한도 차감분을 다른 은행에 추가 배정하는 한편 7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준수 은행에서 차감한 한도를 중소기업 대출 취급에 적극적인 여타 은행에 추가 배정할

예정이어서 한도와 대출액 간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한도와 대출액 간의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향후 시행 검토중인 중소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지원에 한도 여유가 있겠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본부 한도를 적극활용하고자 한다며 현재 각 지역본부에서는 배정한도의 30% 정도를 기본한도로 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동 한도를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용도로 적극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한도 70% 정도는 현행대로 지역 특화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이 총액한도대출제도와 같은 미시적인 정책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에 있어 중앙은행이 시장의 특정 부문이나 참가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일종의 규제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5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 6천억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24호 — 2005년 3/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3/4분기 유동 성조절대출의 한도를 2005년 2/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2000년 6월 이전에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가 없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동성조절대출은 없었고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결제자금 부족 은행에 대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가 있었는바 동 대출은 익영업일을 만기로 하고 필요시 회전(revolving)방식에 의해연장이 가능한 대출로서 금리는 콜금리에 2%를 가산한 일종의 벌칙금리(penalty rate)를 적용하였으며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2000년 6월에 새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활용 차원에서 50억달러를 한도로 시중은행과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근거 법규와 거래 한도 를 축소 또는 확대할 경우 어느 정도 주기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5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